

# [ KEIT 사업설명회 ]

2022. 11



# 목 차

## INDEX

I  
II  
III  
IV

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

협력모델

으뜸기업

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



# [ 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R&D 신규지원 안내 ]

2022. 11



# 목 차

## INDEX

**I**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

---

**II** 2023년 지원방향

---

**III** 과제 신청 등 세부 사항

---

# I

---

사업목적 및 지원내용

# 1.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(1)

## 사업목적

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,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·부품기술 개발 지원

## 지원대상 및 지원방향

### ■ 지원대상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(소재·부품 및 장비의 범위)에 해당되는 소재·부품 및 장비업종분야

- (패키지형)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**소재-부품-모듈-장비-수요간 모든 단위 기술에 걸쳐 연계** 가능한 기술개발
- (이종기술융합형) **2개 이상 異種기술 결합, 업종 연계 및 단기간 개발**을 통해 산업 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위해 산·학·연 컨소시엄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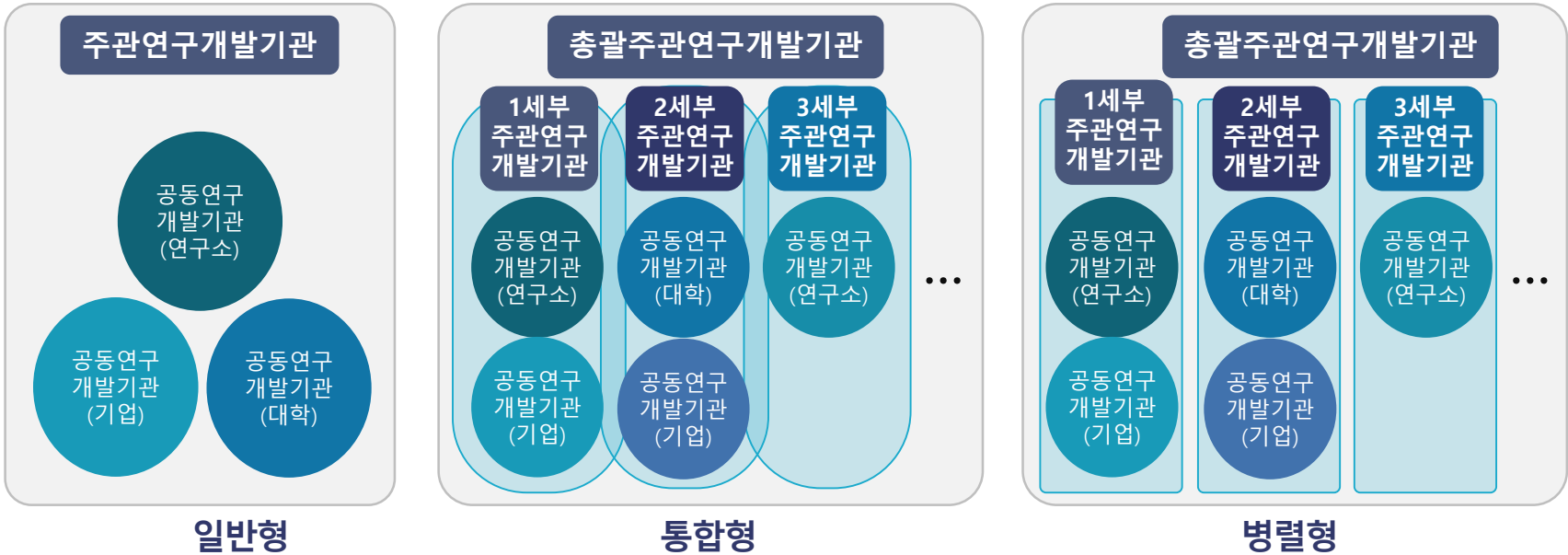
### ■ 지원방향

- (패키지형)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**통합형/병렬형, 일반형** 과제의 형태로 지원하며, **통합형/병렬형** 과제는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**수요기업** 참여를 의무화
- (이종기술융합형) 일반형 과제 형태로 지원하며, **개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관 또는 수요기업** 참여 의무화

※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

## [참고] 사업 추진체계

<b>일반형</b>	총 1개 과제로 구성,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수행
<b>통합형</b>	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연계, 시스템 통합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 → 총괄/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
<b>병렬형</b>	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 → 총괄/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, 총괄/세부 단위별 경합평가



# 1.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(2)

## 소재부품 범위

※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

-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
-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
-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
-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

한국표준산업분류	업종명
13	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
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
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24	1차 금속 제조업
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28	전기장비 제조업
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58	출판업



## 1.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(3)

## 지원내용

구분	소재부품기술개발
지원규모	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, 추후 공고될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 ( <b>때키지형: '23년 신규 631억원 내외</b> ) ( <b>이종기술융합형: '23년 신규 374억원 내외</b> )
지원기간	3~5년 내외 (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, 과제제안요구서(RFP) 참조)
주관연구 개발기관 자격	<b>중소·중견기업</b> (단, RFP에 대기업·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) ※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법인사업자에 한함
공동연구 개발기관 자격	제한없음 (단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)
과제구성 의무사항	( <b>통합형</b> ) 한 개 이상의 <b>수요기업*</b> 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(총괄과제 제외) -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( <b>병렬형</b> ) 세부과제별 <b>수요기업</b> 참여 필수(총괄과제 제외) - 총괄 및 세부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( <b>일반형</b> ) 이종기술융합형의 경우 <b>신뢰성 평가기관</b> 또는 <b>수요기업</b> 참여 필수
협약유형	일괄협약
기술료	영리기관별 징수

- 1) 1차년도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책정 필요(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 연구개발비는 조정될 수 있음)
- 2) "수요기업"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**성능 평가 및 검증** 역할을 하는 기업  
-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, 기관부담현금 비율을 **중소기업 수준**으로 조정가능 (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 참여 가능)  
-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세부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**확약서** 제출 필수
- 3) 총괄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

# II

---

2023년 지원방향

# 1. 개요

## '23년 예산(안)

(단위 : 백만원)

내역사업	총예산	신규과제 예산
패키지형	812,905	63,103
이종기술융합형	124,658	37,429
합계	937,563	100,532

\* 예산요구(안)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

## 내역사업별 지원현황

- (패키지형) 원소재(원료·소재)-중간재(부품·모듈·장비)-최종재(제품) 개발 및 수요실증사업화에 걸친 R&D 전주기 수요·공급을 고려한 과제지원
  - ✓ 대형과제(총괄형): 기간 4~7년(중장기)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~50억원/년
- (이종기술융합형) 이어달리기(기초·원천(과기부)→응용·상용(산업부)) 및 민간 투자연계(자유공모) R&D 과제지원
  - ✓ 이어달리기: 기간 4년 이내(단기)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~15억원/년
  - ✓ 투자연계형: 기간 3년 이내(단기)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~10억원/년

## 2. 과제기획 추진방향

### 추진 방향

- ◆ 현재 공급망 안정화 및 대외 의존도 개선
- ◆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공급망 창출·선점

### 추진전략

### 중점 추진내용

#### 정부정책 연계강화

- 신정부 R&D 투자방향, 소부장 전략 등 상위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제 기획
- GVC 재편에 따라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으뜸기업 및 협력모델 지속 지원

#### 미래공급망 선점

- 미래 공급망 창출 및 선점을 위한 소부장 원천기술개발수요처확보사업화 연계 지원
- 기획 과정에서 수요-공급기업 R&D 협업을 강화하고 다수수요-공급 기업을 연계하여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

#### 민간주도· 수요반영

- 수요자의견 반영, 기획방식 및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부처간 이어달리기 지속 추진
-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산학연 R&D 현장의 유망 기술 수요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

#### 국민친화형 R&D

- 일상 생활 속 문제, ESG, 탄소중립 등 사회적 이슈를 기업 성장과 연계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&D 추진
- 도전적·혁신적 연구를 장려하면서 R&D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사전기획연구 시범도입

#### 기획방식 고도화

- 기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검증, 산업통계 및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 정부 투자의 효율성 제고
- 기획과제 대상 특허·경제성·표준화 동향조사 및 보안과제/안전관리형 과제 여부 사전 검토

### 3. 향후일정

기획절차		일정
사전기획	Top-down 정부정책	8월
	Bottom-up 기술수요조사	8~9월
	과제기획 추진계획 수립	10월
기획대상과제 발굴	예산배분 가이드라인 및 기술위원회 구성	~10월 초
	기획대상과제·품목 발굴/확정	10월 말
	기획대상과제·품목 인터넷 공시	10월 말
	과제기획전담팀 구성	11월 초
상세과제기획	과제제안요구서(RFP) 및 기획보고서 작성	11~12월 초
	특허동향조사, 사전경제성분석, 표준화동향조사, 안전성 검토	11월
	과제기획 종합검토	(상세기획 中 수시)
	보안사항 검토	11월 말
기획검증/우선순위	과제기획결과(RFP) 인터넷 공시(공청회)	12월 초
	과제제안요구서(RFP) 보완	~ 12월 중
	우선순위 및 지원대상과제(안) 도출	12월 중
사업심의위원회		12월 말
사업 공고		'23.1월 중

\* 추진일정 및 내용은 정부 R&D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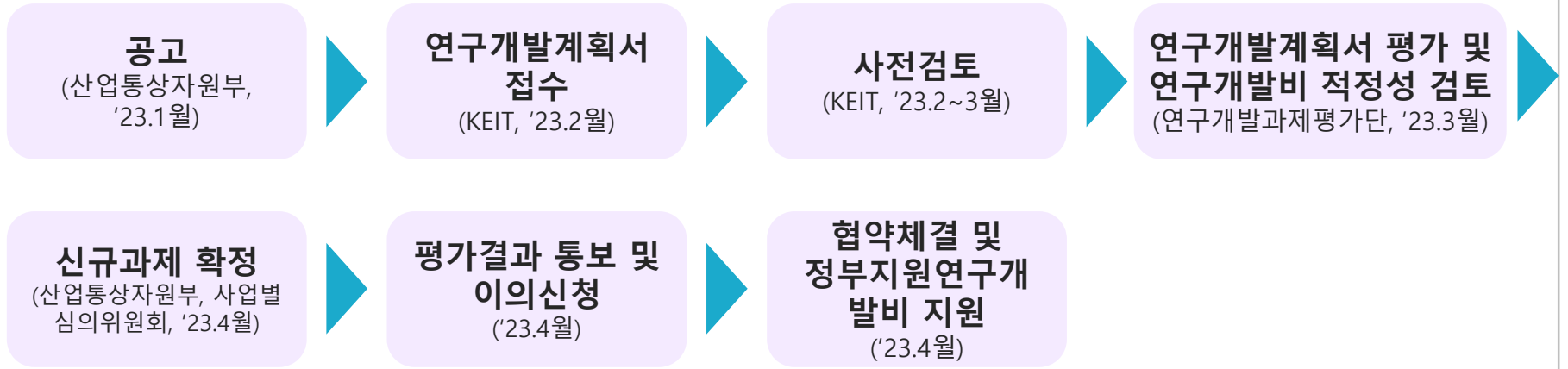
# III

---

과제 신청 등 세부 사항

# 1. 추진 절차

## R&D 지원 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- 사전검토 :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검토
- 이의신청 : 연구개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,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
- 사업별 심의위원회 : 평가결과 조정. 심의  
(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)

## 2.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### 신청자격

#### ■ 주관연구개발기관

접수마감일 현재 **법인사업자**이며, 평가(발표평가) 개최일 이전에 **기업부설연구소**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-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(www.rnd.or.kr)에서 발급된 인증서에 한함

#### ■ 공동연구개발기관

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

- 통합형의 경우 한 개 이상의 **수요기업 참여 필수**(총괄과제 제외)
- 병렬형의 경우 세부과제별 수요기업 참여 필수
- 국외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**연구개발기관 외 기관**으로 참여



### 3. 연구개발비 지원기준

#### 구성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함 (단,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물로만 구성할 수 있음)

#### (수행기관별) 정부지원연구개발비,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

##### ■ 정부지원연구개발비

연구개발기관 <sup>1)</sup> 유형	지원 비율 (혁신제품형)
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% 이하
중견기업 <sup>2)</sup>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
중소기업 <sup>3)</sup>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% 이하
그 외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

1) '연구개발기관'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 
 2)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1호의 기업임  
 3)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  
 \*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80% 이하로 할 수 있음.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% 이하로 할 수 있음

##### 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

수행기관 유형	부담비율 (혁신제품형)
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% 이상
중견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중소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% 이상
그 외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

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현금부담이 가능함  
**(단, 다른 유리한 조건(대형통합형, 핵심전략기술 등)과 중복적용 불가)**

## 4. 신규지원과제 지원제외(1)

※ 공고문 참조 요망

###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(평가 X)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**참여제한** 중인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 예외) 및 신청기관의 장(단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라 “공직유관단체”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),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 - 기업의 **부도**
 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**체납** 처분을 받은 경우
 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**채무불이행자**로 등록된 경우
  - **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**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  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**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**인 기업 또는 **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**인 기업.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
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(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)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)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 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**자본전액잠식**  
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
  - 외부 감사기업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**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**
-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**중소기업 3개, 중견기업 5개를 초과**하는 경우 (단,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)
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 1미만인 **한계기업**일 경우(패키지형, 이종기술융합형(이어달리기)에 한함)

## 4. 신규지원과제 지원제외(2)

※ 공고문 참조 요망

###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(평가 외)

- 품목지정의 경우,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- 지정공모의 경우,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(RFP)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과제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

※ 중복성 검토(예시)
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[www.keitrekf.com](http://www.keitrekf.com)) 접속 → 자료 → KET지원과제검색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[www.nisg.go.kr](http://www.nisg.go.kr)) 접속 → 사업과제 → 세부과제 → 세부과제검색
- 의무사항 불이행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(보고서 미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미납 등)
-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
-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
- 과제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(사업별 안내문 내 과제기획실무작업반 명단 참조)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
- 최종 결과(소재부품)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(단,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)
-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

## 5. 평가절차 및 기준

### 평가 기준

#### ■ 평가항목 (혁신제품형)

- (패키지형) 기술성 및 개발능력(50), 경제성 및 사업성(50)
- (이종기술융합형) 기술성 및 개발능력(50),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(50)

※ 지표별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,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

#### ■ 과제 선정

- 종합평점 점수가 **70점 이상**인 과제를 '지원 가능과제'로 분류하며 70점 이상인 과제가 다수 일 경우 종합평점(평가점수)이 가장 높은 과제를 '지원대상 과제'로 선정함
-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술성, ②사업화 및 경제성, ③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

## 6. 신청(지원) 방법(1)

### 제출 서류 사항

서류명	제출기관	비고
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	주관연구 개발기관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
연구개발계획서	주관연구 개발기관	온라인 업로드(hwp)
사업자등록증	영리기관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 - 영리기업만 제출
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주관/공동 모두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 -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가능 - 국외기관의 경우 국외기관용 LOI 제출 필수
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(필수)	주관/공동 모두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
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주관/공동 모두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
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주관연구 개발기관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
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	주관/공동 모두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
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주관/공동 모두	온라인 전산 입력(첨부파일 자동생성)
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	주관연구 개발기관	온라인 전산 입력(첨부파일 자동생성) -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(PDF 스캔)
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	해당시 제출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
연구수행총량준수 약약서	주관연구 개발기관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
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약약서	주관/공동 모두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
수요기업 약약서	주관연구 개발기관	온라인 업로드(PDF로 스캔) -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필수 제출
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영리기관 (주관/참여)	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( <a href="http://www.findsystem.co.kr/fs/FSDSI05R1.pop?instCd=78">http://www.findsystem.co.kr/fs/FSDSI05R1.pop?instCd=78</a> )

## 6. 신청(지원) 방법(2)

###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

- 접수처 : [itech.keitrek.kr](http://itech.keitrek.kr) → 연구과제수행 > 과제접수 메뉴(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제출)
-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
-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, 위. 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사전지원 제외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접수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·제출이 원칙(<https://itech.keitrek.kr> 회원가입 필요)
-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,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
-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
-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모든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온라인 제출을 완료해야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'R&D 샌드박스'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'R&D 샌드박스'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(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&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), 신규 연구개발기관 선정 이후 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안내 예정
- 접수마감일 18: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(**18:00 이후 제출 · 수정 · 보완 모두 불가**)되므로 **18:00 이전까지 '제출 완료'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**

## 7. 청년의무채용

###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채용 의무화

청년인력(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)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(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) 청년인력 **1명** 이상을 신규채용

- 누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 必
-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의무 채용

※(예시) 수행기관 중 N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,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

구 분	1차년도		2차년도		3차년도	
	해당연도	누적	해당연도	누적	해당연도	누적
정부지원 연구개발비	3억	3억	3억	6억	4억	10억
의무채용	1명	1명	1명	2명	0명	2명

## 8. 기타

### 수요기업 참여

-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**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**해야 함
    -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**수요기업 협약서를 제출**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해야 함. 미준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  -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※ 신뢰성평가기관은 수요기업 협약서 제출대상이 아님(이종기술융합형)

### 신뢰성평가기관

- 신뢰성 평가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(<https://www.knab.go.kr>에서 관련기관 검색 가능)
- ※ 바이오·의료분야 중 의약품분야의 경우 GLP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도 가능 (<https://emed.mfds.go.kr>에서 관련기관 검색가능)

### 대형통합형

-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서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**5개 이상** 참여하여야 함(사업자등록번호 기준)

(예시)

과제유형	주관	공동
총괄	A기업	(없음)
1세부	A기업	B기업, C기업, D연구원
2세부	B기업	D연구원, E대학



**참여연구개발기관 : 5개**  
A기업, B기업, C기업, D연구원, E대학



## 9. 관련 규정

### 관련 규정

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(2022. 1. 4.)

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

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(2022. 1. 4.)

「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

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

「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」

「연구자육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」

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(2022. 1. 4.)

세부 내용 및 양식 등은 추후 공고될  
[itech.keit.re.kr](http://itech.keit.re.kr)(사업공고)을  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연구개발 지원에  
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
감사합니다



**Keit**

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
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